

검토의견서

【주택관리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(의원발의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과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감사계획 및 실시·운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(안 5조~11조)

3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요청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맑고,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조례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과로 이송되어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참고사항

- 주택법 59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
- 주택법 시행령 82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